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0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5532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02590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최광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김성은, 문훈성

변론종결 2023. 5. 18.

판결선고 2023. 7. 20.

주문

1. D와 피고 B이 2020. 5.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89,105,5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105,5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F, D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다. 피고 B은 D의 형제이고, 피고 C은 D의 배우자이다.

나. E은 2014. 6. 20. 이 법원 2013가합101394호로 F, D에 대하여 ‘F, D는 연대하여 E에게 1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E의 F,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H, I, F, D, 피고 B이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한편 F은 2019. 8. 11. 사망하였다.

라. E은 2020. 7.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F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강제집행실시를 위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20. 10. 26.경 D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5. 25. 접수

제55430호로 '2016.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6. 24. 접수 제66752호로 '2020.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D는 2020. 5. 25.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1/5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D와 피고 B 사이에 2020.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D의 위 상속지분 가액 상당인 89,105,5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89,105,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망인과 그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12. 9. 17.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가족 중 누구든 미납된 이자와 경매비용을 부담하면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근저당채무 등을 상환하였고 2013. 3. 26.경부터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즉 망인, D피고 B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망인의 자녀들), 피고 C은 20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세금 문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미루다가 2020. 5.경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2020. 5. 25.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던 2012. 9.경 또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인 2016. 1. 26.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5. 11.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5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먼저, 망인, 망인의 자녀들, 피고 C 사이에 20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갑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J조합의 근저당권 및 2011. 10. 6.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J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채권최고액 145,2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J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었는데, J조합은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여 2020. 6. 22. 실행된 대출은 망인의 담보대출 상황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과 망인의 자녀들 및 피고 C이 20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6. 1. 26.경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망인은 2016. 1. 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란에는 ‘2016.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이 2016. 1. 26. 사망한 이후 망인의 자녀 F이 2019. 8. 11. 사망하였는데, 2020. 5. 25. 마쳐진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중 법무사가 제출한 ‘상속계보도’ 서류에 “이남 F(2019. 8. 11. 사망)-자 K, L, M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전원의 표시’ 서류에 “공동상속인 K, L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2016. 1. 26.경에는 망 F이 생존하였으므로 망 F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망 F의 자녀인 K, L이 망 F을 대신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 기재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④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2020. 5.경에야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그러한 협의에 따라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 5. 25. 신청되어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원인이 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그 무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2016. 1. 26.이 아니라 적어도 망 F의 사망시점(2019. 8. 11.) 이후로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0. 5. 25.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처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인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시점이 2020. 5. 25.인 이상, 2021. 5.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의 전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은 514,802,732원[= 원금 183,500,000원 + 이자 331,302,732원(183,500,000원 × 2014. 5. 9.부터 2023. 5. 18.까지 3,297일 × 연 20%)]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D가 이 사건 협의 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 당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협의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되,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2020. 6. 22. 해지되어 그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는 D의 법정상속분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법정상속분의 부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 또한 위 한도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의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67,304,1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121,776,265원(원금 121,000,000원 + 이자 776,26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협의 당시 D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분의 가액은 89,105,567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567,304,100원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21,776,265원) × D의 상속지분 1/5]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은 514,802,73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89,105,567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는 89,105,5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9,105,5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김은수, 판사 정수호

별지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 628㎡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4.89㎡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축사
39.60㎡
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축사
16.28㎡
부속건물신축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2.89㎡

